

세종 더휴 예미지 N1블록(새나루마을 4단지)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공고



■ [건본주택 미운영]

※ 본 아파트는 건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 홈페이지(<http://hs-thehue.com>)에서 분양 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21.5.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아파트에 입주자(추가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에 당첨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 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 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10.(금), 주택관리번호는 2022910161 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5.24(금)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19000481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http://hs-thehue.com>)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 기간을 적용 받지 아니한 자 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 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 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10년간

- ※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단,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 단지로 계약해제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청약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정	06월 15일(수)	06월 20일(월)	06월 24일(금)	06월 27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 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APT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Home에 10일간만 개시) 	아산한신더휴 견본주택 (주소 : 아산시 모종동 370번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기간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매금지**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06.20)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세종특별자치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1블럭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리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 지상 최고 20층 6개동 총 338세대 중 계약해제 2세대
- 입주시기 : 2022년 7월 27일 ~ 2022년 8월 31일
- 공급대상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해당타입	대상세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합계
국민 주택	2022910161	01	59.9800C	59C	1	59.9800	19.4354	79.4159	41.9419	121.3575	53.1713
		02	84.0000D	84D2O	1	84.6800	27.4390	112.1190	59.2138	171.3330	75.0673
	합 계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해당타입	동	호수	공급금액(원)			계	계약금(20%) 계약시	잔금(80%) 2022-07-27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59.9800C	59C	406	501	46,438,855	212,561,145	-	259,000,000	51,800,000	207,200,000
84.0000D	84D2O	403	204	114,984,090	227,015,910	-	342,000,000	68,400,000	273,600,000

■ **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동호수	구분	공급금액 (원, 부가세 포함)	계약금(20%)	잔금(80%)	계
			계약시	2022-07-27	
406동 501호	발코니확장	7,900,000	1,580,000	6,320,000	
	발코니확장	13,800,000	2,760,000	11,040,000	
403동 204호	전기오븐	350,000	70,000	280,000	
	여닫이 불박이장	2,400,000	480,000	1,920,000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품목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의 비용은 공급계약금액을 납부하시고,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양대금/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농협은행	301-0251-6490-31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발코니 확장	농협은행	301-0251-6483-01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추가선택품목	농협은행	301-0251-6480-91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406동 501호 계약자 → ‘4060501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제한을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청약신청 제한

-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 공급질서 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당첨된 자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일정

- ※ 서류제출 일시 : 2022.06.24(금) 10:00~16:00
- ※ 서류 검토 및 검증으로 인해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전체 내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출입국 사실 증명원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현재로 지정하여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전체 내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계약체결 장소 비치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2.06.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사업주체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자격, 주택소유정보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당첨자 지위가 상실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2.06.27.(월) 10:00~16: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아파트 및 발코니, 추가선택품목(84D2O타입만 해당) 계약금 20% 납부 확인 서류,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신분증,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시 상기 대리인 구비서류 추가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정당계약자의 계약체결일 이후 예비순번별 동·호수 선정하여 진행하며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잔여세대 발생시 선순번부터 유선통보 예정이며, 선순번 계약 완료시 후순번에게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청약당첨자는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향후 다른 주택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향후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기간 향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

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을 청약 전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www.hs-thehue.com)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02-3393-3320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